[서식 예] 배당이의의 소(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세마을금고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이사장 ◈◆◈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배당이의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타경○○○○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 ○○. ○. ○.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금 362,147,325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 357,147,325원으로 경정하고, 원고에게 금 5,000,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타경○○○○○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보증금 5,000,000원의 우선변제를 요구하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, 배당이 되지 않아 배당기일인 20○○. ○. ○. 배당에 관한 이의를 진술하였습니다.
- 2. 원고는 금 5.000.000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여 소외 ●●●와 사이에 임대차계

약을 체결하고 ○○시 ○○길 ○○ 소재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인 건물에 항 하고 20○○. ○. ○.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한다 거주하고 있는바,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- 3. 또한, 위 건물이 등기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,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 이상이 방과 부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방으로 된 건강기구판매사무실로 영업이 끝나면 이곳 사무실도 방으로 이용하였으며, 임차인인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고, 이곳이 원고의 유일한 주거이므로 사실상의 용도 및 사회통념상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, 원고는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1.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1. 갑 제3호증사진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2통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	, tō 🕍
관할법원	배당법원(민사집행법 제156조) 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민사집행법 제154조, 제160 관련법규
711211	수만큼의 부본 제출 조 제1항 제5호
불복절차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
및 기간	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비 용	·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1)참조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	·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: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저
	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최
	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
	제151조 제3항). ·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 :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
	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,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
기 타	원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이의가 취
	하된 것으로 보고 유보되었던 배당을 실시하므로 소제기증명서, 변론
	기일소환장 등을 제출하여 소제기를 증명해야 함(민사집행법 제154
	조 제1항, 제3항).
	·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
	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
	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,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
	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
	그 임대차의 목적,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
	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
	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함(대법원
	1996. 3. 12. 선고 95다51953 판결).
	건물 중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
	그 면적의 절반은 방(2칸)으로,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
	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 있고, 피고가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
	거주하면서 음식점영업을 하며 방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
	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함(대법원 1996.
	두넥입대자보호법의 보호대장인 구기용 건물에 해당함(대법원 1990. 5. 31. 선고 96다5971 판결).
	0.01. d= 0010011 d=/.

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

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